

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직무(안 제2조)

- ▶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
- ▶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
- ▶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
- ▶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
- ▶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

나. 위촉(안 제3조)

- ▶ 고문노무사의 수(1인) 및 위촉기간(1년)에 관한 사항

다. 해촉(안 제4조)

- ▶ 고문노무사 해촉에 관한 사항

라. 수당(안 제5조)

- ▶ 고문노무사 수당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360만원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8. 7. 26. ~ 2018. 8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(이하 “고문노무사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
2.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
3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
4.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
5.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·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(위촉) ① 고문노무사는 「공인노무사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.

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

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.

제4조(위촉해제)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
2.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
3.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5조(수당)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.

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.

제6조(자문실적부 비)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 적부를 작성하고 관 하여야 한다.

제 조(비 수)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계 된 사 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 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

하여서는 된다.

제 조(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동 의 서

(제3조제3항 관련)

본인은 「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」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공인노무사 ○ ○ ○ (인)

평 창 군 수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위 축 장

(제3조제4항 관련)

공인노무사 ○○○

귀하를 「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평창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.

【위촉기간】

년

월

일부터

년

월

일까지

20

년

월

일

평 창 군 수 (직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계 약 서 (제3조제4항 관련)

평창군수와 공인노무사 000간에 「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」에 따라 평창군 또는 하부 행정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「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평창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성실의무)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창군수가 자문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수당 등) ① 고문노무사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평창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(회신일 기준)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평창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라서 자문료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약의 해석)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·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[붙임]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

년 월 일

평 창 군 수 〇 〇 〇 (직인)

평창군 고문노무사 〇 〇 〇 (인)

◦ 주 소 :

◦ 생 년 월 일 :

◦ 전 화 번 호 :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~ 나. 생략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~ 카. 생략

2. ~ 6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공인노무사법

제2조(직무의 범위)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·신청·보고·진술·청구(이의신청·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)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

2.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

3.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·지도

4. 「근로기준법」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

5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52조에서 정한 사적(私的) 조정이나 중재

② 제1항제4호에서 "노무관리진단"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(勞使)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·노무관리·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·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.

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**으로 정한다.

제3조(자격)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.

제5조(등록)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**제2조**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**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~ ③ 생략

제14조(비밀 엄수)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(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)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징계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.

1. **제6조**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·운영한 경우
2. **제7조의3제2항**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
3. **제7조의9**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
4. **제11조제4항**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
5. **제12조**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
6. **제13조**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
7. **제14조**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8. **제18조제1항**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9. **제20조의3**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
10. 노무법인·합동사무소를 설립·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
11.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·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,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
12.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
 -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.
 -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(이하 "개업노무사 등"이라 한다.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등록취소
 2. 3년 이하의 직무정지
 3.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4. 견책(譴責)
 - ④ ~ ⑦ 생략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비용 최대 360만원 예상
 - 300,000원 x 12월 = 3,600,000원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